

#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 (김윤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773
----------	------

발의연월일 : 2021. 1. 29.

발의자 : 김윤덕 · 김성주 · 김수홍

김정호 · 김철민 · 문정복

문진석 · 송갑석 · 안호영

양기대 · 윤준병 · 이규민

이상직 · 이용호 · 이원택

이정문 · 정일영 · 하영제

허영 · 홍기원 의원

(20인)

### 제안이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와 같은 지적사업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등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을 주요업무로 함.

2015년 사명을 ‘대한지적공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개명하면서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과 공간정보산업 기반 마련에 이바지하는 공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법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더불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42개 조문 중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7개로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가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하는 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음.

따라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분리하여 공사의 설립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공사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업무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설립하여 국토정보의 통합적 구축 및 관리와 공간정보의 효율적 활용, 그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1조).
- 나. 공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 업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등에 따른 공간정보 구축 및 지원 사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수행함(안 제6조).
- 다. 공사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 공사

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등으로 조  
달함(안 제9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한 사업이나 공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에 관하여 공사를 지도·감독함(안 제19조).

##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설립하여 국토정보의 통합적 구축·관리, 국가공간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제공, 공간정보·지적제도의 연구·기술개발,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설기관(연구원, 교육원 등)·지역본부·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정관 등)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다음 각 목을 제외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등에 따른 공간정보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  
(지적측량업은 제외한다)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해당하는 사업
2. 공간정보·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 개발, 표준화 및 교육사업
  3. 공간정보·지적제도에 관한 외국 기술의 도입, 국제 교류·협력 및 국외 진출 사업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하는 지적측량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수행할 수 있거나 위탁받은 사업
  8. 그 밖에 공사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7조(임원) ① 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과 부사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③ 감사는 공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④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8조(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①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직원을 임면한다.

②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9조(자금의 조달 등) ① 공사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
  2.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제6조에 따른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4. 제13조에 따른 차입금(借入金)
  5. 제14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금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출자 등) ① 공사는 공사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수수료 등의 징수) 공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자금의 차입 등) 공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제14조(채권의 발행) ① 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은 그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잉여금의 처리) 공사는 매 사업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補填)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16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국가는 공사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공사가 그 사업 또는 운영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

제18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9조(공사에 대한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1.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사항
2.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공사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사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다른 법률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과태료)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는 이 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